



제19312호(그2) 2018. 8. 6.(월)

2018.8.6일자는 정호,
(그2)로 발행됩니다.

【공 고】

○국방부공고제2018-156호(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안> 입법예고)	2
○국방부공고제2018-157호(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2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15호(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3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53호(공시송달)	5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31호(공시송달)	14

【법 원】

○결정(서울고등법원)	17
○결정(대전고등법원)	18
○결정(부산지방법원)	24
○결정(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8
○결정(수원지방법원)	29

공 고

●국방부공고제2018-156호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6일

국 방 부 장 관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첩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직할부대로 설치한 국군기무사령부를 군 조직 개혁의 일환으로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자우편 : browneyes@mnd.go.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이 폐지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실(전화 02-748-6576,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157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6일

국 방 부 장 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설치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설치 목적, 직무, 직무수행의 기본 원칙, 부서와 부대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설치(제1조, 제2조)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나. 기본원칙(제3조)

사령부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직무수행 시 법령 및 정치적 중립 준수 규정 마련

다. 조직(제6조)

사령부에 사령관, 참모장, 감찰실장 각 1명을 두고, 참모부서와 사령관 소속으로 군사안보지원부대, 군사안보지원학교 등을 설치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자우편 : browneyes@mnd.go.kr
- 팩스 : 02-748-0458

4. 그 밖의 사항

이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실(전화 02-748-6576,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15호

「공항시설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항시설에서 승인 없이 영업행위 등을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 등의 영업제지 또는 퇴거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면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칙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15399호, 2018. 2. 21. 공포, 8. 22.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 등의 제지 또는 퇴거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칙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위임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추가(안 50조 개정)

표찰, 표시, 화단, 그 밖에 공항의 시설 또는 주차장의 차량을 훼손 또는 오손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쓰레기, 그 밖에 물건을 버리는 행위 등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를 시행령으로 규정

나.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경미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의 부과기준 마련(안 58조, 별표 4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운영자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영업행위의 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을 범칙행위로 규정하고, 범칙금 금액 등 부과기준을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항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건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전화 : 044-201-4331)

- 전자우편 : huniedong@korea.kr

- 팩스 : 044-201-5634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044-201-4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3. 행정처분 대상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9200000064	302동진호	(주)성원해상	전파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5번길	청문일자 2018.08.23.
2	421994200000043	DSDD9	(주)피아해운사장	전파사용료 체납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청문일자 2018.08.23.
3	422010200000387	DSQZ6	(주)피아해운사장	전파사용료 체납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청문일자 2018.08.23.
4	731994200000008	HL573	(주)피아해운사장	전파사용료 체납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청문일자 2018.08.23.
5	732010200000086	DS692	(주)피아해운사장	전파사용료 체납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청문일자 2018.08.23.
6	422010300000133	600해피크루즈호	(주)한려해상관광	전파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어운4길	청문일자 2018.08.23.
7	422004100000123	DSOT3	(주)해원팩토리	전파사용료 체납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여술1길	청문일자 2018.08.23.
8	732009200000036	DS427	(주)해원팩토리	전파사용료 체납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여술1길	청문일자 2018.08.23.
9	422012200000109	306명선호	김*순	전파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청문일자 2018.08.23.
10	422009200000043	300승리호	김*화	전파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사천시 새동네1길	청문일자 2018.08.23.
11	422017200000400	301하영호	김*호	전파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원문로	청문일자 2018.08.23.
12	422016200000083	300미진호	김*배	전파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충렬3길	청문일자 2018.08.23.
13	422017200000599	300우람호	김*석	전파사용료 체납	전라남도 여주시 돌산읍 우두1길	청문일자 2018.08.23.
14	422017200000295	311보성호	김*주	전파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사천시 수남4길	청문일자 2018.08.23.
15	422009200000057	300광일호	김*순	전파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리로	청문일자 2018.08.23.
16	422017200000367	300삼육오호	김*민	전파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산양일주로	청문일자 2018.08.23.
17	422016200000975	308은하수호	김*호	전파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청문일자 2018.08.23.
18	422015200000209	300청하호	김*권	전파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주도2길	청문일자 2018.08.23.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9	422016200000098	300선방호	박*식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장평신촌1길	청문일자 2018.08.23.
20	422015200000263	300이진호	박*효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1길	청문일자 2018.08.23.
21	422012200000215	311전승호	송*연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청문일자 2018.08.23.
22	422012200000277	312전승호	송*연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청문일자 2018.08.23.
23	422012200000278	313전승호	송*연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청문일자 2018.08.23.
24	422017200000222	313해정호	오*명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정동2길	청문일자 2018.08.23.
25	422017200000357	303힐링호	이*용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로4길	청문일자 2018.08.23.
26	422016200000096	310태양호	이*연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1길	청문일자 2018.08.23.
27	422017200000477	300칼라피싱호	이*연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오산3길	청문일자 2018.08.23.
28	422013200000103	313항진호	이*배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풍화일주로	청문일자 2018.08.23.
29	422017200000509	334조양호	임*규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1로7번길	청문일자 2018.08.23.
30	422017200000352	301만물호	정*주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육지면 육지일주로	청문일자 2018.08.23.
31	412015200000010	300스카이블루호	정*연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거제시 성산로4길	청문일자 2018.08.23.
32	422017200000177	301칠성호	정*구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육지면 두미남부길	청문일자 2018.08.23.
33	412012200000139	307미래호	정*범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2860번길	청문일자 2018.08.23.
34	422016200000966	302해림호	정*자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사천시 신향1길	청문일자 2018.08.23.
35	422016200000957	362수성호	정*임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해안로	청문일자 2018.08.23.
36	422016200000161	300용부호	정*자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강길19번길	청문일자 2018.08.23.
37	422017200000331	301청운호	차*환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로	청문일자 2018.08.23.
38	422017200000414	316용성호	최*호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로85번길	청문일자 2018.08.23.
39	412014200000142	300놀자	한*호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로 46	청문일자 2018.08.23.
40	422016200000222	302에비스호	황*성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39번안길	청문일자 2018.08.23.
41	942013210001339	해병전우회양산 지부503호	(사)해병전우회경 남연합회양산시 지부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삼계2길	청문일자 2018.08.23.
42	942013210001340	해병전우회양산 지부504호	(사)해병전우회경 남연합회양산시 지부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삼계2길	청문일자 2018.08.23.
43	942012210007331	기남이앤씨501호	(주)기남이앤씨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4길	청문일자 2018.08.23.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4	942012210007332	기남이엔씨502호	(주)기남이엔씨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4길	청문일자 2018.08.23.
45	942015210005288	부산블루600	(주)블루웨이브이 엔엠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153번길	청문일자 2018.08.23.
46	942015210005289	부산블루601	(주)블루웨이브이 엔엠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153번길	청문일자 2018.08.23.
47	942015210005290	부산블루602	(주)블루웨이브이 엔엠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153번길	청문일자 2018.08.23.
48	942015210005291	부산블루603	(주)블루웨이브이 엔엠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153번길	청문일자 2018.08.23.
49	942015210005292	부산블루604	(주)블루웨이브이 엔엠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153번길	청문일자 2018.08.23.
50	942015210005293	부산블루605	(주)블루웨이브이 엔엠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153번길	청문일자 2018.08.23.
51	942015210005294	부산블루606	(주)블루웨이브이 엔엠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153번길	청문일자 2018.08.23.
52	942015210005295	부산블루607	(주)블루웨이브이 엔엠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153번길	청문일자 2018.08.23.
53	942015210005296	부산블루608	(주)블루웨이브이 엔엠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153번길	청문일자 2018.08.23.
54	942015210005297	부산블루609	(주)블루웨이브이 엔엠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153번길	청문일자 2018.08.23.
55	942012210009753	세신이엔씨612호	(주)세신이엔씨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청문일자 2018.08.23.
56	942012210009754	세신이엔씨613호	(주)세신이엔씨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청문일자 2018.08.23.
57	942015210000600	세신이엔씨614호	(주)세신이엔씨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청문일자 2018.08.23.
58	942015210000601	세신이엔씨615호	(주)세신이엔씨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청문일자 2018.08.23.
59	942015210001252	세신이엔씨616호	(주)세신이엔씨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청문일자 2018.08.23.
60	942015210001253	세신이엔씨617호	(주)세신이엔씨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청문일자 2018.08.23.
61	942015210001254	세신이엔씨618호	(주)세신이엔씨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청문일자 2018.08.23.
62	942015210002424	세신이엔씨619호	(주)세신이엔씨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청문일자 2018.08.23.
63	942015210002425	세신이엔씨620호	(주)세신이엔씨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청문일자 2018.08.23.
64	942015210003291	세신이엔씨621호	(주)세신이엔씨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청문일자 2018.08.23.
65	942015210003292	세신이엔씨622호	(주)세신이엔씨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청문일자 2018.08.23.
66	942015210004114	세신이엔씨623호	(주)세신이엔씨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청문일자 2018.08.23.
67	942015210004115	세신이엔씨624호	(주)세신이엔씨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청문일자 2018.08.23.
68	942015210004116	세신이엔씨625호	(주)세신이엔씨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청문일자 2018.08.23.
69	942016210003776	세신이엔씨630	(주)세신이엔씨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청문일자 2018.08.23.
70	942016210003777	세신이엔씨631	(주)세신이엔씨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청문일자 2018.08.23.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71	942016210003778	세신이엔씨632	(주)세신이엔씨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청문일자 2018.08.23.
72	942016210003779	세신이엔씨633	(주)세신이엔씨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청문일자 2018.08.23.
73	942015210008283	일만타일501	(주)일만타일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강로	청문일자 2018.08.23.
74	942015210008284	일만타일502	(주)일만타일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강로	청문일자 2018.08.23.
75	942015210008285	일만타일503	(주)일만타일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강로	청문일자 2018.08.23.
76	942015210008286	일만타일504	(주)일만타일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강로	청문일자 2018.08.23.
77	942015210008287	일만타일505	(주)일만타일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강로	청문일자 2018.08.23.
78	942015210007175	제이에이치테크5 11	J.H TECH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	청문일자 2018.08.23.
79	942015210007176	제이에이치테크5 12	J.H TECH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	청문일자 2018.08.23.
80	942015210007177	제이에이치테크5 13	J.H TECH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	청문일자 2018.08.23.
81	942015210007178	제이에이치테크5 14	J.H TECH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	청문일자 2018.08.23.
82	942015210007179	제이에이치테크5 15	J.H TECH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	청문일자 2018.08.23.
83	942015210007180	제이에이치테크5 16	J.H TECH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	청문일자 2018.08.23.
84	942015210007181	제이에이치테크5 17	J.H TECH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	청문일자 2018.08.23.
85	942015210007182	제이에이치테크5 18	J.H TECH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	청문일자 2018.08.23.
86	942015210007183	제이에이치테크5 19	J.H TECH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	청문일자 2018.08.23.
87	942015210007184	제이에이치테크5 20	J.H TECH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	청문일자 2018.08.23.
88	942016210007350	광도500	광도ENG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자굴산로7길	청문일자 2018.08.23.
89	942016210007351	광도501	광도ENG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자굴산로7길	청문일자 2018.08.23.
90	942016210007352	광도502	광도ENG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자굴산로7길	청문일자 2018.08.23.
91	942016210007458	광도503	광도ENG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자굴산로7길	청문일자 2018.08.23.
92	942016210007459	광도504	광도ENG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자굴산로7길	청문일자 2018.08.23.
93	942016210007463	광도505	광도ENG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자굴산로7길	청문일자 2018.08.23.
94	942016210007464	광도506	광도ENG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자굴산로7길	청문일자 2018.08.23.
95	942016210007465	광도507	광도ENG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자굴산로7길	청문일자 2018.08.23.
96	942017210001884	광도의령508	광도ENG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자굴산로7길	청문일자 2018.08.23.
97	942017210001885	광도의령509	광도ENG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자굴산로7길	청문일자 2018.08.23.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98	942017210002189	덕의진주열501	권*열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덕의길	청문일자 2018.08.23.
99	942017210004055	덕의진주502	권*열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덕의길	청문일자 2018.08.23.
100	942016210008425	양산중앙동500	김*하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우회로	청문일자 2018.08.23.
101	942016210008426	양산중앙동501	김*하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우회로	청문일자 2018.08.23.
102	942017210000001	하대력키성500	김*균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청문일자 2018.08.23.
103	942017210000002	하대력키성501	김*균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청문일자 2018.08.23.
104	942011210003343	김성하501호	김*하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99번길	청문일자 2018.08.23.
105	942011210003344	김성하502호	김*하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99번길	청문일자 2018.08.23.
106	942014210008547	연산영수501호	김*수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230번길	청문일자 2018.08.23.
107	942016210007208	진양현500	김*곤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청문일자 2018.08.23.
108	942016210007209	진양현501	김*곤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청문일자 2018.08.23.
109	942016210007210	진양현502	김*곤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청문일자 2018.08.23.
110	942016210007211	진양현503	김*곤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청문일자 2018.08.23.
111	942014210004066	동성거제501호	동성기업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	청문일자 2018.08.23.
112	942014210004067	동성거제502호	동성기업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	청문일자 2018.08.23.
113	942014210004068	동성거제503호	동성기업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	청문일자 2018.08.23.
114	942014210004069	동성거제504호	동성기업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	청문일자 2018.08.23.
115	942014210004070	동성거제505호	동성기업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	청문일자 2018.08.23.
116	942014210004071	동성거제506호	동성기업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	청문일자 2018.08.23.
117	942014210004072	동성거제507호	동성기업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	청문일자 2018.08.23.
118	942014210004073	동성거제508호	동성기업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	청문일자 2018.08.23.
119	942014210004074	동성거제509호	동성기업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	청문일자 2018.08.23.
120	942014210004075	동성거제510호	동성기업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	청문일자 2018.08.23.
121	942016210004206	화명현501	박*현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	청문일자 2018.08.23.
122	942016210004207	화명현502	박*현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	청문일자 2018.08.23.
123	942016210000702	수영호중501	손*중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702번길	청문일자 2018.08.23.
124	942016210000703	수영호중502	손*중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702번길	청문일자 2018.08.23.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25	942016210000704	수영호중503	손*중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702번길	청문일자 2018.08.23.
126	942016210000705	수영호중504	손*중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702번길	청문일자 2018.08.23.
127	942016210000706	수영호중505	손*중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702번길	청문일자 2018.08.23.
128	942008210001963	에스피피해운 501호	에스피피해운주 식회사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로	청문일자 2018.08.23.
129	942008210001964	에스피피해운 502호	에스피피해운주 식회사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로	청문일자 2018.08.23.
130	942008210001965	에스피피해운 503호	에스피피해운주 식회사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로	청문일자 2018.08.23.
131	942008210007482	에스피피해운 504호	에스피피해운주 식회사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로	청문일자 2018.08.23.
132	942008210007483	에스피피해운 505호	에스피피해운주 식회사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로	청문일자 2018.08.23.
133	942008210007484	에스피피해운 506호	에스피피해운주 식회사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로	청문일자 2018.08.23.
134	942008210007485	에스피피해운 507호	에스피피해운주 식회사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로	청문일자 2018.08.23.
135	942011210008156	에스피피해운 508호	에스피피해운주 식회사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로	청문일자 2018.08.23.
136	942011210008157	에스피피해운 509호	에스피피해운주 식회사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로	청문일자 2018.08.23.
137	942011210008158	에스피피해운 510호	에스피피해운주 식회사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로	청문일자 2018.08.23.
138	942011210008293	에스피피해운 511호	에스피피해운주 식회사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로	청문일자 2018.08.23.
139	942017210002710	진해해원수501	오*수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32번길	청문일자 2018.08.23.
140	942017210002711	진해해원수502	오*수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32번길	청문일자 2018.08.23.
141	942017210002744	부전동수501	이*수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청문일자 2018.08.23.
142	942017210002745	부전동수502	이*수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43, 8동 5호 (부전동)	청문일자 2018.08.23.
143	942015210007445	일성창원500	일성건설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12번길	청문일자 2018.08.23.
144	942015210007446	일성창원501	일성건설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12번길	청문일자 2018.08.23.
145	942017210001906	당리동옥501	임*옥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하로31번길	청문일자 2018.08.23.
146	942017210001907	당리동옥502	임*옥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하로31번길	청문일자 2018.08.23.
147	942014210004876	망미용완501호	전*완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로22번길	청문일자 2018.08.23.
148	942014210004877	망미용완502호	전*완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로22번길	청문일자 2018.08.23.
149	942010210011881	정유철501호	정*철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343번길	청문일자 2018.08.23.
150	942010210011882	정유철502호	정*철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343번길	청문일자 2018.08.23.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51	942010210011883	정유철503호	정*철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343번길	청문일자 2018.08.23.
152	942010210011884	정유철504호	정*철	전과사용료 체납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343번길	청문일자 2018.08.23.
153	942016210003352	만영500	주식회사 만영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청문일자 2018.08.23.
154	942016210003353	만영501	주식회사 만영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청문일자 2018.08.23.
155	942016210003354	만영502	주식회사 만영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청문일자 2018.08.23.
156	942016210003355	만영503	주식회사 만영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청문일자 2018.08.23.
157	942016210003356	만영504	주식회사 만영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청문일자 2018.08.23.
158	942016210003357	만영505	주식회사 만영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청문일자 2018.08.23.
159	942016210003358	만영506	주식회사 만영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청문일자 2018.08.23.
160	942016210003359	만영507	주식회사 만영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청문일자 2018.08.23.
161	942016210003360	만영508	주식회사 만영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청문일자 2018.08.23.
162	942016210003361	만영509	주식회사 만영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청문일자 2018.08.23.
163	942016210003362	만영510	주식회사 만영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청문일자 2018.08.23.
164	942016210003363	만영511	주식회사 만영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청문일자 2018.08.23.
165	942016210003364	만영512	주식회사 만영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청문일자 2018.08.23.
166	942016210003365	만영513	주식회사 만영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청문일자 2018.08.23.
167	942016210003367	만영515	주식회사 만영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청문일자 2018.08.23.
168	942016210003368	만영516	주식회사 만영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청문일자 2018.08.23.
169	942016210003369	만영517	주식회사 만영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청문일자 2018.08.23.
170	942017210002901	케이티이지501	주식회사 케이티이지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청문일자 2018.08.23.
171	942017210002902	케이티이지502	주식회사 케이티이지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청문일자 2018.08.23.
172	942017210002903	케이티이지503	주식회사 케이티이지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청문일자 2018.08.23.
173	942017210002904	케이티이지504	주식회사 케이티이지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청문일자 2018.08.23.
174	942017210002905	케이티이지505	주식회사 케이티이지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청문일자 2018.08.23.
175	942017210002906	케이티이지506	주식회사 케이티이지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청문일자 2018.08.23.
176	942017210002907	케이티이지507	주식회사 케이티이지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청문일자 2018.08.23.
177	942017210002908	케이티이지508	주식회사 케이티이지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청문일자 2018.08.23.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78	942017210002909	케이티이지509	주식회사 케이티이지	전과사용료 채납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청문일자 2018.08.23.
179	942017210002910	케이티이지510	주식회사 케이티이지	전과사용료 채납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청문일자 2018.08.23.
180	942017210002911	케이티이지511	주식회사 케이티이지	전과사용료 채납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청문일자 2018.08.23.
181	942017210002912	케이티이지512	주식회사 케이티이지	전과사용료 채납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청문일자 2018.08.23.
182	942017210002913	케이티이지513	주식회사 케이티이지	전과사용료 채납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청문일자 2018.08.23.
183	942017210002914	케이티이지514	주식회사 케이티이지	전과사용료 채납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청문일자 2018.08.23.
184	942017210002915	케이티이지515	주식회사 케이티이지	전과사용료 채납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청문일자 2018.08.23.
185	942017210002916	케이티이지516	주식회사 케이티이지	전과사용료 채납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청문일자 2018.08.23.
186	942017210002917	케이티이지517	주식회사 케이티이지	전과사용료 채납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청문일자 2018.08.23.
187	942017210002918	케이티이지518	주식회사 케이티이지	전과사용료 채납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청문일자 2018.08.23.
188	942017210002919	케이티이지519	주식회사 케이티이지	전과사용료 채납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청문일자 2018.08.23.
189	942017210002920	케이티이지520	주식회사 케이티이지	전과사용료 채납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청문일자 2018.08.23.
190	942017210002921	케이티이지521	주식회사 케이티이지	전과사용료 채납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청문일자 2018.08.23.
191	942017210002922	케이티이지522	주식회사 케이티이지	전과사용료 채납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청문일자 2018.08.23.
192	942017210002923	케이티이지523	주식회사 케이티이지	전과사용료 채납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청문일자 2018.08.23.
193	942017210002924	케이티이지524	주식회사 케이티이지	전과사용료 채납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청문일자 2018.08.23.
194	942017210002925	케이티이지525	주식회사 케이티이지	전과사용료 채납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청문일자 2018.08.23.
195	942017210002926	케이티이지526	주식회사 케이티이지	전과사용료 채납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청문일자 2018.08.23.
196	942017210002927	케이티이지527	주식회사 케이티이지	전과사용료 채납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청문일자 2018.08.23.
197	942017210002928	케이티이지528	주식회사 케이티이지	전과사용료 채납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청문일자 2018.08.23.
198	942017210002929	케이티이지529	주식회사 케이티이지	전과사용료 채납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청문일자 2018.08.23.
199	942017210002930	케이티이지530	주식회사 케이티이지	전과사용료 채납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청문일자 2018.08.23.
200	942016210010250	파스코500	주식회사 파스코(PASCO)	전과사용료 채납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청문일자 2018.08.23.
201	942016210010251	파스코501	주식회사 파스코(PASCO)	전과사용료 채납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청문일자 2018.08.23.
202	942016210010252	파스코502	주식회사 파스코(PASCO)	전과사용료 채납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청문일자 2018.08.23.
203	942016210010253	파스코503	주식회사 파스코(PASCO)	전과사용료 채납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청문일자 2018.08.23.
204	942017210003261	현진이앤지501	주식회사 현진이앤지	전과사용료 채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청문일자 2018.08.23.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205	942017210003262	현진이앤지502	주식회사 현진이앤지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청문일자 2018.08.23.
206	942017210003263	현진이앤지503	주식회사 현진이앤지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청문일자 2018.08.23.
207	942017210003264	현진이앤지504	주식회사 현진이앤지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청문일자 2018.08.23.
208	942017210003265	현진이앤지505	주식회사 현진이앤지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청문일자 2018.08.23.
209	942017210003266	현진이앤지506	주식회사 현진이앤지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청문일자 2018.08.23.
210	942017210003267	현진이앤지507	주식회사 현진이앤지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청문일자 2018.08.23.
211	942017210003268	현진이앤지508	주식회사 현진이앤지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청문일자 2018.08.23.
212	942017210003269	현진이앤지509	주식회사 현진이앤지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청문일자 2018.08.23.
213	942017210003270	현진이앤지510	주식회사 현진이앤지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청문일자 2018.08.23.
214	942017210003271	현진이앤지511	주식회사 현진이앤지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청문일자 2018.08.23.
215	942017210003272	현진이앤지512	주식회사 현진이앤지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청문일자 2018.08.23.
216	942017210003273	현진이앤지513	주식회사 현진이앤지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청문일자 2018.08.23.
217	942017210003274	현진이앤지514	주식회사 현진이앤지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청문일자 2018.08.23.
218	942017210003275	현진이앤지515	주식회사 현진이앤지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청문일자 2018.08.23.
219	942009210001070	태현기업100호	태현기업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	청문일자 2018.08.23.
220	942009210001071	태현기업101호	태현기업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	청문일자 2018.08.23.
221	942009210003850	태현기업102호	태현기업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	청문일자 2018.08.23.
222	942009210003854	태현기업106호	태현기업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	청문일자 2018.08.23.
223	942010210010731	태현기업107호	태현기업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	청문일자 2018.08.23.
224	942010210010732	태현기업108호	태현기업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	청문일자 2018.08.23.
225	942010210010733	태현기업109호	태현기업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	청문일자 2018.08.23.
226	942010210010734	태현기업110호	태현기업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	청문일자 2018.08.23.
227	942010210010735	태현기업111호	태현기업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	청문일자 2018.08.23.
228	942011210005735	태현기업112호	태현기업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	청문일자 2018.08.23.
229	942011210005736	태현기업113호	태현기업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	청문일자 2018.08.23.
230	942014210005627	태현기업504호	태현기업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	청문일자 2018.08.23.
231	942014210005628	태현기업505호	태현기업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	청문일자 2018.08.23.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232	942014210005629	태현기업506호	태현기업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	청문일자 2018.08.23.
233	942014210005630	태현기업507호	태현기업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	청문일자 2018.08.23.
234	942014210005631	태현기업508호	태현기업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	청문일자 2018.08.23.
235	942014210005632	태현기업509호	태현기업	전과사용료 체납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	청문일자 2018.08.23.

4. 참고사항

- 가.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께서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청문실시 대상 무선국 시설자는 2018. 8. 23.(목)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여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다. 허가취소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순번	시설자명	도로명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배달여부
1	김○식	경북 김천시 시청로	452009600000001		전과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허가 취소	주소불명
2	(주)세○이엔씨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942014610005694	세신이엔씨501호	전과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폐문부재
3	(주)세○이엔씨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942014610005695	세신이엔씨502호	전과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폐문부재
4	(주)세○이엔씨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942014610005696	세신이엔씨503호	전과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폐문부재
5	(주)세○이엔씨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942014610005697	세신이엔씨504호	전과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폐문부재
6	(주)엑○콘건설	대구시 중구 봉산문화2길	942017610000329	엑스콘봉산501	전과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이사감
7	(주)엑○콘건설	대구시 중구 봉산문화2길	942017610000330	엑스콘봉산502	전과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이사감
8	(주)엑○콘건설	대구시 중구 봉산문화2길	942017610000331	엑스콘봉산503	전과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이사감
9	(주)엑○콘건설	대구시 중구 봉산문화2길	942017610000332	엑스콘봉산504	전과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이사감

순번	시설자명	도로명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배달여부
10	(주)엑○콘건설	대구시 중구 봉산문화2길	942017610003118	엑스콘봉산505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이사감
11	(주)엑○콘건설	대구시 중구 봉산문화2길	942017610003119	엑스콘봉산506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이사감
12	(주)엑○콘건설	대구시 중구 봉산문화2길	942017610003784	엑스콘횡성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이사감
13	(주)엑○콘건설	대구시 중구 봉산문화2길	942017610003785	엑스콘횡성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이사감
14	(주)엑○콘건설	대구시 중구 봉산문화2길	942017610003786	엑스콘횡성5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이사감
15	(주)엑○콘건설	대구시 중구 봉산문화2길	942017610003787	엑스콘횡성50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이사감
16	(주)엑○콘건설	대구시 중구 봉산문화2길	942017610003788	엑스콘횡성505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이사감
17	TOPS 유○크시○템	대구시 동구 화랑로37길	942017610002900	탑스화랑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폐문부재
18	TOPS 유○크시○템	대구시 동구 화랑로37길	942017610002901	탑스화랑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폐문부재
19	TOPS 유○크시○템	대구시 동구 화랑로37길	942017610002902	탑스화랑5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폐문부재
20	경○사회복○ 협의회	경북 경산시 옥산로	942008610003694	사복경산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이사감
21	경○사회복○ 협의회	경북 경산시 옥산로	942008610003695	사복경산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이사감
22	경○사회복○ 협의회	경북 경산시 옥산로	942008610003696	사복경산5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이사감
23	경○사회복○ 협의회	경북 경산시 옥산로	942008610003697	사복경산50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이사감
24	권○섭	대구시 서구 달서천로41길	942017610002634	순섭서구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폐문부재
25	권○섭	대구시 서구 달서천로41길	942017610002635	순섭서구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폐문부재
26	대○다방	경북 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계로	942012610002503	대계후포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수취인불 명
27	박○원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가태안길	942016610004201	거원달성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폐문부재
28	박○원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가태안길	942016610004202	거원달성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폐문부재
29	박○원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가태안길	942016610004203	거원달성5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폐문부재
30	박○원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가태안길	942016610004204	거원달성50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폐문부재
31	박○원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가태안길	942016610004205	거원달성505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폐문부재
32	우○전기	경북 구미시 인동34길	942011610001817	우림진평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폐문부재
33	우○전기	경북 구미시 인동34길	942011610001818	우림진평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폐문부재
34	우○전기	경북 구미시 인동34길	942011610001819	우림진평5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폐문부재
35	정○영	경북 구미시 역전로	942016610001616	선영구미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폐문부재

순번	시설자명	도로명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배달여부
36	정○영	경북 구미시 역전로	942016610001617	선영구미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폐문부재
37	정○숙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앙길	942016610004650	인숙의성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이사감
38	정○숙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앙길	942016610004651	인숙의성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이사감
39	정○숙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앙길	942016610004652	인숙의성5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이사감
40	주식회사 천○산업개발	경북 경산시 남매로	942017610001967	천등경산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이사감
41	주식회사 천○산업개발	경북 경산시 남매로	942017610001968	천등경산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이사감
42	주식회사 천○산업개발	경북 경산시 남매로	942017610001969	천등경산5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이사감
43	주식회사 천○산업개발	경북 경산시 남매로	942017610001970	천등경산50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이사감
44	주식회사 천○산업개발	경북 경산시 남매로	942017610001971	천등경산505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이사감
45	주식회사 천○산업개발	경북 경산시 남매로	942017610001972	천등경산506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이사감
46	주식회사 천○산업개발	경북 경산시 남매로	942017610001973	천등경산507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이사감
47	주식회사 천○산업개발	경북 경산시 남매로	942017610001974	천등경산508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이사감
48	주식회사 천○산업개발	경북 경산시 남매로	942017610001975	천등경산509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이사감
49	주식회사 천○산업개발	경북 경산시 남매로	942017610001976	천등경산510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이사감
50	주식회사 천○산업개발	경북 경산시 남매로	942017610002903	천등경산51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이사감
51	주식회사 천○산업개발	경북 경산시 남매로	942017610002904	천등경산51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이사감
52	주식회사 천○산업개발	경북 경산시 남매로	942017610002905	천등경산51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이사감
53	주식회사 천○산업개발	경북 경산시 남매로	942017610002906	천등경산51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이사감
54	주식회사 천○산업개발	경북 경산시 남매로	942017610002907	천등경산515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이사감
55	주식회사 천○산업개발	경북 경산시 남매로	942017610002908	천등경산516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이사감
56	주식회사 천○산업개발	경북 경산시 남매로	942017610002909	천등경산517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이사감
57	주식회사 천○산업개발	경북 경산시 남매로	942017610002910	천등경산518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이사감
58	주식회사 천○산업개발	경북 경산시 남매로	942017610002911	천등경산519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이사감
59	주식회사 천○산업개발	경북 경산시 남매로	942017610002912	천등경산520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이사감
60	향○농원	대구시 동구 미곡동	942017610003494	향미동구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폐문부재
61	향○농원	대구시 동구 미곡동	942017610003495	향미동구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폐문부재

순번	시설자명	도로명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배달여부
62	향○농원	대구시 동구 미곡동	942017610003496	향미동구503	전과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신고 폐지	폐문부재

2. 근거법령: 전과법 제67조(전과사용료), 전과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과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18. 9. 4.(화) 10:00

6. 청문장소: 대구전과관리소 소회의실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과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37 형사보상
(2017재노194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청 구 인 전명순 (540925-*****)
주거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24-24, 116동 902호 (쌍용동, 현대홈타운아이파크)
등록기준지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211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9. 선고 2017재노194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58,488,8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8. 12. 29. 망 오인재(1938. 8. 5.생, 2017. 8.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망인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78고합767).

나. 이에 대하여 망인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1979. 4. 1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망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고(79노21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의 재심청구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2017. 12. 5. 위 확정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한 다음, 2018. 2. 9. 망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2017재노194), 위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망인은 1978. 12. 4. 영장에 의하여 구금되었다가 1979. 7. 17.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

마. 청구인은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구금으로 인한 보상으로 14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람으로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26일 동안 구금을 당하였음이 인정되고, 기록상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구금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3조 제2항,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1일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인 2017년(망인이 사망한 때)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인 51,760원(시급 최저임금액 6,470원 × 8시간), 1일 상한은 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인 258,800원(51,760원 × 5)이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와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1일 보상금액은 최대금액인 258,800원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58,488,800원(258,800원 × 226일)이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58,488,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17.

재판장	판사	김대웅
	판사	이완희
	판사	위광하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3 형사보상
[2016노4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청 구 인 임상옥 (610201-*****), 부동산개발 컨설팅업
주거 서울 관악구 봉천로 308-7, 3층(봉천동)
등록기준지 전주시 중양동4가 84-3

무 죄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7. 5. 19. 선고 2016노481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6,300,000원을, 비용보상금 5,136,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2015. 10. 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의사실로 불구속 기소.

나. 2016. 12. 8. 제1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선고(대전지방법원 2015고합342). 법정구속.

다. 2017. 5. 19. 항소심 원심판결 파기 및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 선고(대전고등법원 2016노481). 석방.

라. 2017. 8. 29. 상고심 검사 상고 기각(대법원 2017도8149). 판결 확정.

마. 청구인의 공판기일 등 출석 횟수 : 총 13회(제1심 10회, 항소심 3회)

바. 변호인

1) 제1심 :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정갑생

2) 항소심 : 변호사 임창혁

3) 상고심 : 변호사 임창혁, 장준원

2. 형사보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 발생(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나. 총 구금일수 : 2016. 12. 8.부터 2017. 5. 19.까지 총 163일 미결구금

다. 1일 보상금액의 범위 : 51,760원~258,800원(무죄 판결 확정된 2017년 기준)

라. 1일 보상금액의 결정 : 위 범위에서 100,000원으로 결정(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마. 형사보상금액: 16,300,000원(=163일 × 100,000원/일)

3.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위 형사보상에 더하여 구금으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위자료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와 별도로 위자료를 보상금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1일 보상금액을 100,000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이와 별도로 위자료를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비용보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 발생(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나. 피고인 여비, 일당¹⁾

1) 여비: 286,000원(=총 13회 출석 × 제1심, 항소심 당시 청구인 주거지로 파악된 서울 기준 1회 출석시 여비 22,000원)(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2) 일당: 650,000원(=총 13회 출석 × 청구인 일당 50,000원/회)(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3) 합계: 936,000원(=여비 286,000원 + 일당 650,000원)

다. 재판 준비 비용

1) 청구인은 1회 왕복여비를 15만 원으로 산정하여 '기타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구하고 있는데, 공판기일에 주거지와 법원을 왕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구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피고인 여비뿐만 아니라 피고인 일당도 청구한 것으로 본다.

청구인은 위 공판기일 등 출석횟수 외 조사참여 및 재판 준비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5회 정도의 공판기일 출석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이에 대한 왕복여비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에 소요된 비용’ 중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여비’는 통상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를 의미하고, 재판 준비를 위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기 위해 들인 여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변호인 보수

제1심, 항소심 각 1,500,000원, 상고심 1,200,000원 합계 4,200,000원(=1,500,000원 + 1,500,000원 + 1,200,000원)으로 결정(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 참작하여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한 2016, 2017년 국선 변호인 기본 보수액 제1심 400,000원, 항소심 및 상고심 300,000원의 최대 증액인 5배수의 범위에서 위와 같이 정한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마. 합계 : 5,136,000원(=피고인 여비 등 936,000원 + 변호인 보수 4,200,000원)

5. 총보상결정액

21,436,000원(=형사보상금 16,300,000원 + 비용보상금 5,136,000원)

2018. 7. 17.

재판장	판사	권혁중
	판사	도영오
	판사	심학식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6 형사보상
[2017노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청 구 인 김성만 (650125-*****), 농업
주거 논산시 반송길 102-5(부적면)
등록기준지 논산시 부창동 230

대 리 인 변호사 이비룡

무 죄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7. 6. 16. 선고 2017노2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26,700,000원, 비용보상금 3,195,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 가. 2016. 10.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피의사실로 불구속 기소.
- 나. 2016. 12. 21. 제1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4년,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선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고합37). 청구인 법정구속.
- 다. 2017. 6. 16. 항소심 원심판결 파기 및 무죄 선고(대전고등법원 2017노2). 청구인 석방.
- 라. 2017. 10. 12. 상고심 검사 상고 기각(대법원 2017도9796). 판결 확정.
- 마. 청구인의 공판기일 등 출석 횟수 : 총 7회(제1심 3회, 항소심 4회)
- 바. 변호인

- 1) 제1심 : 변호사 도중철(제1, 2회 공판기일에서는 국선)
- 2) 항소심 : 변호사 이비룡
- 3) 상고심 : 변호사 이비룡
- 2. 형사보상청구에 관한 판단
 - 가. 형사보상청구권 발생(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나. 총 구금일수 : 2016. 12. 21.부터 2017. 6. 16.까지 총 178일 미결구금
 - 다. 1일 보상금액의 범위 : 51,760원~258,800원(무죄 판결 확정된 2017년 기준)
 - 라. 1일 보상금액의 결정 : 위 범위에서 150,000원으로 결정(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마. 형사보상금액: 26,700,000원(=178일 × 150,000원/일)
- 3. 비용보상청구에 관한 판단
 - 가. 비용보상청구권 발생(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 나. 피고인 여비, 일당
 - 1) 여비: 49,000원(=총 7회 출석 × 제1심, 항소심 당시 청구인 주거지로 파악된 논산시 기준 1회 출석시 여비 7,000원)(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 2) 일당: 350,000원(=총 7회 출석 × 청구인 일당 50,000원/회)(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3) 합계: 395,000원(=여비 49,000원 + 일당 350,000원)
 - 다. 변호인 보수

제1심 400,000원, 항소심 1,500,000원, 상고심 900,000원 합계 2,800,000원(=400,000원 + 1,500,000원 + 900,000원)으로 결정(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 참작하여 항소심은 대법관회의에서 의결한 2016, 2017년 국선 변호인 기본 보수액 300,000원의 최대 증액인 5배로 결정하고, 상고심은 변호인의 수와 사건 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 제1심의 경우 제1, 2회 공판기일까지는 변호사 도중철이 국선변호인으로 관여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된 이후 사선변호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그 변호인 보수를 위와 같이 정한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 마. 합계 : 3,195,000원(=피고인 여비 등 395,000원 + 변호인 보수 2,800,000원)
- 4. 총보상결정액

29,895,000원(=형사보상금 26,700,000원 + 비용보상금 3,195,000원)

2018. 7. 17.

재판장	판사	권혁중
	판사	도영오
	판사	심학식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1 형사보상
(2017노175 준강간)

청 구 인 서용근 (740805-*****) , 회사원
주거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1351번길 26, 101호(북대동)
등록기준지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29

무 죄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7노175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20,150,000원, 비용보상금 4,2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2016. 10. 26. 준강간 피의사실로 불구속 기소.

나. 2017. 4. 21. 제1심 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선고(대전지방법원 2016고합403). 청구인 법정구속.

다. 2017. 9. 22. 항소심 원심판결 파기 및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 선고(대전고등법원 2017노175). 청구인 석방.

라. 2017. 12. 22. 상고심 검사 상고 기각(대법원 2017도16779). 판결 확정.

마. 청구인의 공판기일 등 출석 횟수 : 총 8회(제1심 4회, 항소심 4회)

바. 변호인

- 1) 제1심 : 변호사 정영관
- 2) 항소심 : 변호사 이효상
- 3) 상고심 : 변호사 김평수, 이효상

2. 형사보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 발생(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나. 총 구금일수 : 2017. 4. 21.부터 2017. 9. 22.까지 총 155일 미결구금

다. 1일 보상금액의 범위 : 51,760원~258,800원(무죄 판결 확정된 2017년 기준)

라. 1일 보상금액의 결정 : 위 범위에서 130,000원으로 결정(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마. 형사보상금액 : 20,150,000원(=155일 × 130,000원/일)

3. 비용보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 발생(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나. 변호인 보수

제1심, 항소심 각 1,500,000원, 상고심 1,200,000원 합계 4,200,000원(=1,500,000원 + 1,500,000원 + 1,200,000원)으로 결정(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 참작하여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한 2016, 2017년 국선 변호인 기본 보수액 제1심 400,000원, 항소심 및 상고심 300,000원의 최대 증액인 5배수의 금액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정한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4. 총보상결정액

24,350,000원(=형사보상금 20,150,000원 + 비용보상금 4,200,000원)

2018. 7. 18.

재판장	판사	권혁중
	판사	도영오
	판사	심학식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2 형사보상
 [2016노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청구인 김장환 (510913-*****) , 무직
 주거 대전 서구 둔산로 155, 108동 402호(둔산동, 크로바아파트)
 등록기준지 대전 서구 둔산동 908-1

대 리 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위현석, 노계성, 이학근, 이경원, 정유철

무 죄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6노92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28,400,000원, 비용보상금 4,7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 가. 2015. 9.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피의사실로 불구속 기소.
- 나. 2016. 2. 16. 제1심 사기죄로 징역 3년 선고[대전지방법원 2015고합304, 318(병합)]. 청구인 법정 구속.
- 다. 2016. 7. 6. 항소심 보석허가결정(대전고등법원 2016초보5). 청구인 석방.
- 라. 2017. 5. 26. 항소심 원심판결 파기 및 무죄 선고(대전고등법원 2016노92).
- 마. 2017. 12. 28. 상고심 검사 상고 기각(대법원 2017도8899). 판결 확정.
- 바. 청구인의 공판기일 등 출석 횟수 : 총 16회(제1심 6회, 항소심 10회)

사. 변호인

- 1) 제1심 : 법무법인 강남 담당변호사 이정원
- 2) 항소심 :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위현석, 이학근
 법무법인 강남 담당변호사 박영수, 이정원
- 3) 상고심 :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위현석, 이학근, 노계성

2. 형사보상청구에 관한 판단

- 가. 형사보상청구권 발생(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나. 총 구금일수 : 2016. 2. 16.부터 2016. 7. 6.까지 총 142일 미결구금
- 다. 1일 보상금액의 범위 : 51,760원~258,800원(무죄 판결 확정된 2017년 기준)
- 라. 1일 보상금액의 결정 : 위 범위에서 200,000원으로 결정(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마. 형사보상금액 : 28,400,000원(=142일 × 200,000원/일)

3. 비용보상청구에 관한 판단

- 가. 비용보상청구권 발생(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 나. 변호인 보수

제1심은 2,000,000원, 항소심 1,500,000원, 상고심 1,200,000원 합계 4,700,000원(=2,000,000원 + 1,500,000원 + 1,200,000원)으로 결정(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 참작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의결한 2016, 2017년 국선 변호인 기본 보수액 제1심 400,000원, 항소심 및 상

고심 300,000원의 최대 증액인 5배수의 금액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정한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번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다. 합계 : 4,700,000원

4. 총보상결정액

33,100,000원(=형사보상금 28,400,000원 + 비용보상금 4,700,000원)

2018. 7. 18.

재판장	판사	권혁중
	판사	도영오
	판사	심학식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226 형사보상
(2017고단6385 도로범위반)

청 구 인 태림운수 주식회사 (181211-*****)
소재지 경남 의령군 정곡면 법정로7길 91-6
대표자 청산인 강영호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4. 24. 선고 2017고단6385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53,876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심을 통한 무죄판결의 확정

가. 청구인은 1994. 2. 2. 부산지방법원 94고약1138 도로범위반 사건으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1994. 3.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1994. 12. 22. 위 벌금을 완납하였다.

나.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재심을 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385 도로범위반 사건에서 2018. 4. 24.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5. 2.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보상의 근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따라 벌금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부일 다음 날인 1994. 12. 23.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8. 7. 20.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353,876원(300,000원×0.05×8,611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을 합한 653,876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53,8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20.

재판장	판사	이윤직
	판사	문기선
	판사	배준익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212 형사보상
(2017고단6382 도로범위반)

청 구 인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80111-*****)
소재지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217(전포동)
대표이사 박재익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4. 24. 선고 2017고단6382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10,808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심을 통한 무죄판결의 확정

가. 청구인은 1997. 8. 11. 부산지방법원 97고약21429 도로범위반 사건으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1997. 9.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1997. 11. 4. 위 벌금을 완납하였다.

나.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재심을 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382 도로범위반 사건에서 2018. 4. 24.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5. 2.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보상의 근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따라 벌금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부일 다음 날인 1997. 11. 5.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8. 7. 20.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310,808원(300,000원×0.05×7,563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을 합한 610,808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10,8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20.

재판장	판사	이윤직
	판사	문기선
	판사	배준익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303 형사보상
(2014고단45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신아운수 주식회사 (110111-*****)
소재지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1011호(구로동)
대표이사 한상동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6. 23. 선고 2014고단459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793,561원, 형사비용보상금 1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심을 통한 무죄판결의 확정

가. 청구인은 2004. 4. 21. 부산지방법원 2004고약18355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 명령을 고지받고 2004. 5.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2006. 10. 23. 위 벌금을 완납하였다.

나.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재심을 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459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2014. 6. 23.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 1. 확정되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위 2014고단459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명(담당변호사 고은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보상의 근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따라 벌금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부일 다음 날인 2006. 10. 24.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8. 7. 18.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293,561원(500,000원×0.05×4,286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을 합한 793,561원이다.

3. 형사비용보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보상의 근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처벌법규의 소급적 효력상실로 인하여 무죄임이 분명한 사건으로 사건의 난이도가 매우 낮은 점, 동일 유형의 다른 사건관계인과의 형평성 및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변호인 보수를 100,000원(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0,000원×1/3)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793,561원, 형사비용보상금 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18.

재판장	판사	이윤직
	판사	문기선
	판사	배준익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215 형사보상
(2017고단6000 도로범위반)

청 구 인 인터지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천양항운 주식회사) (180111-*****)
소재지 부산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중앙동4가)
대표이사 정원우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4. 24. 선고 2017고단6000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38,63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심을 통한 무죄판결의 확정

가. 청구인은 1996. 1. 11. 부산지방법원 95고약40700 도로범위반 사건으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위 약식명령이 1996. 2. 16. 확정되었는데, 그 전인 1995. 12. 26. 위 벌금을 가납하였다.

나.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재심을 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000 도로범위반 사건에서 2018. 4. 24.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5. 2.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보상의 근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따라 벌금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부일 다음 날인 1995. 12. 27.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8. 7. 18.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338,630원(300,000원×0.05×8,240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을 합한 638,630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38,6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18.

재판장	판사	이윤직
	판사	문기선
	판사	배준익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230 형사보상
(2017고단639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태림운수 주식회사 (181211-*****)
소재지 경남 의령군 정곡면 법정로7길 91-6
대표자 청산인 강영호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4. 24. 선고 2017고단6392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74,068원을 지급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 11. 24. 도로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4. 1.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2003. 9. 30. 위 벌금을 납부한 사실, 그 후 위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재심판결이 2018. 5. 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형 집행에 대한 보상 및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그 보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구하는 형 집행에 대한 보상액으로서 국가가 이미 징수한 벌금액 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결정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174,068원[= 10만 원 + {10만 원 × 0.05 × (5,407일/365일)}, 단,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20.

재판장	판사	최 환
	판사	김회근
	판사	박혜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9 형사보상
(2017고정545 특수재물손괴)

청 구 인 조대업 (800929-*****) , 기타
주거 대구 동구 율하동로10길 18, 다정빌 302(율하동)
등록기준지 경남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739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0. 25. 선고 2017고정545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특수재물손괴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10.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죄판결(2017고정545)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항소심 법원은 2018. 6. 22. 항소기각판결(대구지방법원 2017노4934)을 선고하였고, 상고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2018. 6. 30.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7. 8. 25.부터 2017. 10. 25.까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위 사건의 제1심 공판기일(선고기일 포함)에 3회, 항소심 공판기일에 3회 출석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여비 60,000원과 일당 300,000원 합계 360,000원의 비용보상을 구한다.

나.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비용보상의 범위

1)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청구인의 여비·일당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모두 6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1회 공판기일 출석 시 소요되는 비용은 50,000원²⁾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여비에 대한 보상액의 합계는 300,000원(= 50,000원 × 6회)이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20.

재판장	판사	이봉수
	판사	이형원
	판사	이준석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2 형사보상
(2017고단6548 도로범위반)

2) 2017년 및 2018년 대법관회의에서 의결한 증인의 일당 상한액은 모두 50,000원인바, 위 상한액 전액을 청구인의 운임, 식비 등이 모두 포함된 비용으로 인정함

청 구 인 성광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로 63-10 (백봉리)
 대표이사 박성숙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30. 선고 2017고단6548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3,428,415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 가. 수원지방법원 2001. 6. 15.자 2001고약23720 약식명령 확정
- 나. 2004. 3. 20. 벌금 2,000,000원 납부
- 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2017. 10. 30. 무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548), 2017. 11. 7. 확정

2. 판단

-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나. 보상의 범위: 3,428,415원

이미 징수한 벌금액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 날인 2004. 3. 21.부터 이 사건 결정 일인 2018. 7. 2.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2,000,000원 + 2,000,000원 × 0.05 × (14 + 104/366), 원 미만 버림](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3. 결론

형사보상금으로 3,428,415원 지급
 2018. 7. 2.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조혜수
	판사	추진석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
결 정

사 건건 2018코4 형사보상
 (2017고단577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성광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로 63-10 (백봉리)
 대표이사 박성숙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7고단577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231,598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 가. 수원지방법원 2001. 11. 9.자 2001고약52608 약식명령 확정
- 나. 2003. 4. 24. 벌금 700,000원 납부

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2017. 9. 29. 무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7고단5779), 2017. 10. 11. 확정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나. 보상의 범위: 1,231,598원

이미 징수한 벌금액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 날인 2003. 4. 23.부터 이 사건 결정 일인 2018. 7. 2.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700,000원 + 700,000원 × 0.05 × (15 + 69/366), 원 미만 버림](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3. 결론

형사보상금으로 1,231,598원 지급

2018. 7. 2.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조혜수
	판사	추진석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6 형사보상
(2017고단6544 도로범위반)

청 구 인 유한회사 삼미운수사
소재지 목포시 삼학로183번길 1, 4층(산정동)
대표이사 문현철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30. 선고 2017고단6544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46,926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수원지방법원 1994. 12. 24.자 94고약30838 약식명령 확정

나. 1995. 5. 16. 벌금 300,000원 납부

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2017. 10. 30. 무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544), 2017. 11. 7. 확정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나. 보상의 범위: 646,926원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 날인 1995. 5. 17.부터 이 사건 결정 일인 2018. 7. 2.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300,000원 + 300,000원 × 0.05 × (23 + 47/366), 원 미만 버림](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3. 결론

형사보상금으로 646,926원 지급

2018. 7. 2.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조혜수
	판사	추진석

수원지방법원**제14형사부****결 정**

사 건 2018코10 형사보상

(2017노590 사문서위조등)

청 구 인 최동숙 (410220-*****), 종교가
주거 용인시 처인구 영문로29번길 53-1 (유방동)
등록기준지 수원시 팔달구 지동 228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7노59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21,19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로 기소되어 2017.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2016고단838호), 같은 날 구속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은 2017. 6. 22. 청구인에 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면서(2017노590호), 같은 날 청구인을 석방하였다.

다. 이에 검사가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7. 12. 22.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2017도10851호)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구금보상청구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17. 1. 11.부터 2017. 6. 22.까지 163일 동안 구금되었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7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51,76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51,760원, 상한은 1일 258,800원(= 51,760원 × 5)이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직업 및 생활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

금일수 163일 전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1일 13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21,190,000원(= 130,000원 × 163일)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21,1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9.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조혜수
	판사	추진석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12 형사보상
(2017고정209 업무방해)

청 구 인 최길중 (650803-*****), 사업
주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000, 311동 101호(여수동, 센트럴타운)
등록기준지 전남 고흥군 고흥읍 등암리 463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7고정20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1,538,2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업무방해로 기소되어 2017.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2017고정 209호).

나.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노7247호로 항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17. 12. 18. 검사의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 2017.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모두 7회(제1심 5회, 항소심 2회)에 걸쳐 공판기일(선고기일 포함, 이하 같다)에 출석하였고, 제1심에서 법무법인 세인(담당변호사 강동필)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고,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이 정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일당과 여비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는 ① 증인의 일당에 관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2017년의 경우 50,000원으로 의결)에서 정하고, ② 증인의 여비에 관하여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의 항목은 식비로 하고, 여비 항목은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 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이고,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7년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1심 형사합의공판사건의 경우 400,000원, 그 외의 경우에는 300,000원이다.

다. 일당, 여비 등

청구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모두 7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주거지인 성남시를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 시 소요되는 여비·일당 등은 모두 합하여 62,600원(= 일당 50,000원 + 교통비 5,600원 + 식대 7,000원)이므로, 국가가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일당 등은 438,200원(= 7회 × 62,600원)이 된다.

라. 변호인 보수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사안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 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등을 참작하면 청구인이 구하는 변호인의 보수를 모두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변호인 보수는 1,10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으로 1,538,200원(= 438,200원 + 1,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9.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조혜수
	판사	추진석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14 형사보상
(2017고단6504 식품위생법위반)

청 구 인 이용훈 (790228-*****), 유흥업
주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482-1 성지이너스빌 4동 201호
등록기준지 전북 익산군 왕궁면 동용리 583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30. 선고 2017고단6504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089,452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수원지방법원 2016. 5. 25.자 2016고약9326 약식명령 확정

나. 2016. 9. 26. 벌금 1,000,000원 납부

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2017. 10. 30. 무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504), 2017. 11. 7. 확정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나. 보상의 범위: 1,089,452원

이미 징수한 벌금액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 날인 2016. 9. 27.부터 이 사건 결정 일인 2018. 7. 11.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1,000,000원 + 1,000,000원 × 0.05 × (1 + 288/365), 원 미만 버림](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3. 결론

형사보상금으로 1,089,452원 지급

2018. 7. 11.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조혜수
	판사	추진석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16 형사보상

(2017고단6505 식품위생법위반)

청 구 인 박장성 (770720-*****), 유흥업

주거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694번길 26, 209동 804호(권선동, 권선SK뷰)

등록기준지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21-115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30. 선고 2017고단6505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3,261,369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수원지방법원 2016. 5. 25.자 2016고약9326 약식명령 확정

나. 2016. 10. 13. 벌금 3,000,000원 납부

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2017. 10. 30. 무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505), 2017. 11. 7. 확정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나. 보상의 범위: 3,261,369원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 날인 2016. 10. 14.부터 이 사건 결정일인 2018. 7. 11.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3,000,000원 + 3,000,000원 × 0.05 × (1 + 271/365), 원 미만 버림](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3. 결론

형사보상금으로 3,261,369원 지급

2018. 7. 11.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조혜수
	판사	추진석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18 형사보상
(2016노8555 사기등)

청 구 인 1. 이재용 (710215-*****) , 운전자
주거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14번길 7-18, 201호 (보라동)
등록기준지 영주시 영주동 162

2. 박정규 (680507-*****) , 미상
주거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126 (지곡동)
등록기준지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21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노8555 판결
주 문

청구인 이재용에게 형사비용보상금 299,000원, 청구인 박정규에게 형사비용보상금 4,799,000원을 각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사기, 사기미수로 기소되어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각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다(2016고정176호)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은 2017. 6. 2. 청구인들에 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2016노8555호).

다.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7. 9. 21.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7도9528호)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모두 5회(제1심 3회, 항소심 2회)에 걸쳐 공판기일(선고기일 포함, 이하 같다)에 출석하였고, 제1심과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변호사 최지희, 김민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들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고, 청구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이 정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일당과 여비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는 ① 증인의 일당에 관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2016년, 2017년의 경우 50,000원으로 의결)에서 정하고, ② 증인의 여비에 관하여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의 항목은 식비로 하고, 여비 항목은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 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이고,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7년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1심 형사합의공판사건의 경우 400,000원, 그 외의 경우 300,000원이다.

다. 일당, 여비 등

청구인들은 위 재판 과정에서 모두 5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출석 당시 주거지인 용인시를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 시 소요되는 여비·일당 등은 모두 합하여 59,800원(= 일당 50,000원 + 교통비 2,800원 + 식비 7,000원)이므로, 국가가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일당 등은 299,000원(= 5회 × 59,800원)이 된다.

라. 변호인 보수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사안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 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등을 참작하여,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제1심과 항소심 및 상고심의 경우 각 1,500,000원(= 300,000원 × 5배)으로 정한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 박정규에게 보상할 변호인 보수는 합계 4,500,000원(= 1,500,000원 + 1,500,000원 + 1,50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비용보상으로 청구인 이재용에게 299,000원, 청구인 박정규에게 4,799,000원(= 299,000원 + 4,5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11.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조혜수
	판사	추진석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20 형사보상
(2016고단5716 강제추행)

청 구 인 송정용 (870309-*****) , 회사원
주거 성남시 수정구 수정북로9번길 7-1, 1층 (태평동)
등록기준지 충주시 살미면 향산리 140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고단571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3,438,2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2017.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2016고단5716호).

나.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17. 12. 21. 검사의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2017노579호),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모두 7회(제1심 3회, 항소심 4회)에 걸쳐 공판기일(선고기일 포함, 이하 같다)에 출석하였고, 제1심에서 변호사 김용균을, 항소심에서 변호사 박창훈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고,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이 정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일당과 여비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는 ① 증인의 일당에 관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2017년의 경우 50,000원으로 의결)에서 정하고, ② 증인의 여비에 관하여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의 항목은 식비로 하고, 여비 항목은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 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이고,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7년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1심 형사합의공판사건의 경우 400,000원, 그 외의 경우 300,000원이다.

다. 일당, 여비 등

청구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모두 7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주거지인 성남시를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 시 소요되는 여비·일당 등은 모두 합하여 62,600원(= 일당 50,000원 + 교통비 5,600원 + 식대 7,000원)이므로, 국가가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일당 등은 7회 × 62,600원)이 된다.

라. 변호인 보수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사안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 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등을 참작하여,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각 심급별로 국선변호인에 대한 기본보수를 최대로 5배 증액하여, 제1심과 항소심 모두 1,500,000원으로 각 정한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변호인 보수는 합계 3,000,000원(= 1,500,000원 + 1,50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으로 3,438,200원(= 438,200원 +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11.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조혜수
	판사	추진석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22 형사보상
(2017고단715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경진화물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서초구 효령로 307 (서초동)
대표이사 이승근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고단715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34,877원, 형사비용보상금 150,000원을 각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수원지방법원 1996. 1. 30.자 96고약747 약식명령 확정

나. 1996. 3. 5. 벌금 300,000원 납부

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2017. 12. 8. 무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7고단7150), 2017. 12. 16.

확정

2. 판단

가. 형사보상금: 634,877원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 날인 1996. 3. 6.부터 이 사건 결정일인 2018. 7. 2.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300,000원 + 300,000원 × 0.05 × (22 + 119/366), 원 미만 버림](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형사비용보상금: 150,000원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을 일부 감액한 150,000원으로 결정(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194조의4,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16조)

3. 결론

형사보상금으로 634,877원, 형사비용보상금으로 150,000원을 각 지급
2018. 7. 2.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조혜수
	판사	추진석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30 형사보상
(2017고단7149 도로범위반)

청 구 인 아주화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강남구 학동로18길 13 (논현동)
대표자 사내이사 최대현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고단714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462,377원, 형사비용보상금 150,000원을 각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수원지방법원 2004. 11. 12.자 2004고약42637 약식명령 확정

나. 2007. 9. 3. 벌금 300,000원 납부

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2017. 12. 8. 무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7고단7149), 2017. 12. 16. 확정

2. 판단

가. 형사보상금: 462,377원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 날인 2007. 9. 4.부터 이 사건 결정일인 2018. 7. 2.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300,000원 + 300,000원 × 0.05 × (10 + 302/366), 원 미만 버림](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형사비용보상금: 150,000원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을 일부 감액한 150,000원으로 결정(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194조의4,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16조)

3. 결론

형사보상금으로 462,377원, 형사비용보상금으로 150,000원을 각 지급
2018. 7. 2.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조혜수
	판사	추진석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32 형사보상
(2017고단5030 도로범위반)

청 구 인 대양기업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삼복기업 주식회사)
소재지 군포시 당정동 379
대표자 청산인 윤재길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29. 선고 2017고단503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998,633원, 형사비용보상금 150,000원을 각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수원지방법원 1996. 9. 9.자 96고약24677 약식명령 확정

나. 1998. 7. 21. 벌금 500,000원 납부

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2017. 8. 29. 무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7고단5030), 2017. 9. 6. 확정

2. 판단

가. 형사보상금: 998,633원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 날인 1998. 7. 22.부터 이 사건 결정 일인 2018. 7. 2.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500,000원 + 500,000원 × 0.05 × (19 + 346/366), 원 미만 버림](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형사비용보상금: 150,000원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을 일부 감액한 150,000원으로 결정(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194조의4,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16조)

3. 결론

형사보상금으로 998,633원, 형사비용보상금으로 150,000원을 각 지급
2018. 7. 2.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조혜수
	판사	추진석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34 형사보상
(2017고단744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대세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237번길 35 (신갈동, 삼일자동차공업사)
대표이사 이연익, 구제민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고단7443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491,352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 가. 수원지방법원 2005. 8. 19.자 2005고약20252 약식명령 확정
- 나. 2005. 9. 28. 벌금 300,000원 납부
- 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2017. 11. 30. 무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7고단7443), 2017. 12. 8. 확정

2. 판단

-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나. 보상의 범위: 491,352원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 날인 2005. 9. 29.부터 이 사건 결정 일인 2018. 7. 2.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300,000원 + 300,000원 × 0.05 × (12 + 277/366), 원 미만 버림](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3. 결론

형사보상금으로 491,352원 지급
2018. 7. 2.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조혜수
	판사	추진석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42 형사보상
(2017고단845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광동티엘에스
 소재지 인천 동구 염전로 52 (송림동)
 대표이사 박택순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고단8451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480,737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 가. 수원지방법원 2008. 2. 15.자 2008고약3409 약식명령 확정
- 나. 2008. 11. 19. 벌금 1,000,000원 납부
- 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2018. 1. 19. 무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7고단8451), 2018. 1. 27.

확정

2. 판단

-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나. 보상의 범위: 1,480,737원

이미 징수한 벌금액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 날인 2008. 11. 20.부터 이 사건 결정일인 2018. 7. 2.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1,000,000원 + 1,000,000원 × 0.05 × (9 + 225/366), 원 미만 버림](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3. 결론

형사보상금으로 1,480,737원 지급
 2018. 7. 2.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조혜수
	판사	추진석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48 형사보상
 (2017고단845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217 (전포동,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사옥)
 대표이사 박재익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고단845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51,967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 가. 수원지방법원 2003. 11. 28.자 94고약34153 약식명령 확정
- 나. 1995. 1. 14. 벌금 300,000원 납부
- 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2018. 1. 19. 무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7고단8450), 2018. 1. 27.

확정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나. 보상의 범위: 651,967원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 날인 1995. 1. 14.부터 이 사건 결정 일인 2018. 7. 2.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300,000원 + 300,000원 × 0.05 × (23 + 170/366), 원 미만 버림](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3. 결론

형사보상금으로 651,967원 지급

2018. 7. 2.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조혜수
	판사	추진석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50 형사보상
(2017고단3851 도로범위반)

청 구 인 삼영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인천 동구 방축로 105, 23동 326-1(송림동, 인천산업용품유통단지)
대표자 사내이사 하순이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7고단3851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2,767,622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수원지방법원 2001. 5. 18.자 2001고약17145 약식명령 확정

나. 2001. 8. 6. 벌금 1,500,000원 납부

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2017. 7. 12. 무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7고단3851), 2017. 7. 20.

확정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나. 보상의 범위: 2,767,622원

이미 징수한 벌금액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 날인 2001. 8. 7.부터 이 사건 결정 일인 2018. 7. 2.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1,500,000원 + 1,500,000원 × 0.05 × (16 + 330/366), 원 미만 버림](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3. 결론

형사보상금으로 2,767,622원 지급

2018. 7. 2.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조혜수
	판사	추진석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60 형사보상
(2016고단539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유한회사 선정운수
소재지 익산시 왕궁면 평장2길 2
대표이사 구선모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고단5395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914,685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수원지방법원 2001. 5. 4.자 2001고약14870 약식명령 확정

나. 2001. 11. 29. 벌금 500,000원 납부

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2016. 10. 21. 무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6고단5395), 2016. 10.

29. 확정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나. 보상의 범위: 914,685원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 날인 2001. 11. 30.부터 이 사건 결정
일인 2018. 7. 2.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500,000원 + 500,000원 × 0.05 × (16 +
215/366), 원 미만 버림](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3. 결론

형사보상금으로 914,685원 지급

2018. 7. 2.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조혜수
	판사	추진석